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5. 27 선고 2020가단5023519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승

담당변호사 임재형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우

변론 종결 2020. 4. 29

판결 선고 2020. 5. 27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2,889,000원 및 그 중 9,247,000원에 대하여는 2018. 6. 30.부터, 15,951,000원에 대하여는 2019. 6. 30.부터, 7,691,000원에 대하여는 2019. 12. 26.부터 각 2020. 1. 14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7. 6. 15. C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D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 전부를 임차하였다.

나. 피고는 2006년경 위 C으로부터 위 건물 중 E호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 다)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받고 이를 점유해 왔다.

다. C은 2017. 4. 30.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기간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계약의 경우 사용,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 에는 대주(貸主)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(민법 제613조 제2항).

나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은 2017. 4. 30. C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.

다.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및 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이익을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정당한 사용,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,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가 구하 는 2017. 12. 1. 이후의 임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 다. 기 간 2017. 12. 1.부터 2018. 6. 30.까지 2018. 7. 1.부터 2019. 6. 30.까지 2019. 7. 1.부터 2019. 12. 26.까지 총 합계월 임료 1,321,000원 1,329,000원 1,317,000원 합

계9,247,000원15,951,000원7,691,000원32,889,000원비고1,321,000원 x7개월1,329,000원
x 12개월1,317,000원 x12개월

라.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32,889,000원 및 그 중, (1) 9,247,000원에 대하여는 2018. 6. 30.부터, (2) 15,951,000원어】대하여는 2019. 6. 30.부터, (3)7,691,000원에 대하여는 2019. 12. 26.부터 각 이 사건 2020. 1. 13.자 청구취지 변경신 청서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. 1. 14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이백규